

#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)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661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년월일 : 2020년 7월 13일

발 의 자 : 서윤기, 김동식, 박기재, 정진철,  
김기대, 김제리, 봉양순, 임만균,  
정재웅, 임종국, 양민규, 이정인,  
유정희, 박기열, 오현정, 전병주,  
이상훈, 김화숙, 황인구, 장상기,  
오중석, 최 선, 채인묵, 장인홍,  
이태성, 추승우, 이동현, 전석기,  
노식래, 노승재, 김경영, 김희걸,  
권순선, 문병훈, 김수규, 김광수,  
유 용, 송도호, 최영주, 문장길,  
최정순, 홍성룡, 김경우 의원(43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관람료 반환규정을 신설함(안 제4조제3항 신설).
- 나. 관람의 제한규정을 변경함(안 제7조제2호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관람을 취소하는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는”을 “사람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.

2.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,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행  | 개   정   안  |
|--|--|
| <p>제4조(관람료) ① · ② (생   략)<br/>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7조(관람의 제한) 시장은 다음<br/>     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br/> <u>자</u>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  략)<br/>           2. <u>술 또는 약물로 인해 다른 사<br/>           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<br/>           는 사람</u><br/>           3. <u>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<br/>          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</u><br/>           4. · 5. (생   략)</p> | <p>제4조(관람료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br/> <u>③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<br/>           관람을 취소하는 때에는 관람료<br/>           를 반환한다.</u></p> <p>제7조(관람의 제한) -----<br/>           -----<br/> <u>사람</u>은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br/>           2. <u>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<br/>           주거나, 줄 우려가 있다고 판<br/>           단되는 사람</u><br/> 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4. · 5. (현행과 같음)</p> |